

숙박약관

(적용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한 것에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내지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계약 신청)

제2조

당 호텔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숙박료를 따른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는 숙박 연장을 요청할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새로이 숙박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음을 증명했을 시는 이와 같이 아니합니다.

2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되면, 숙박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위약금에 이어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 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숙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조직(이하 '폭력조직'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조직원(이하 '폭력조직원'이라 함),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내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인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 또는 이용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 또는 이용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서 열거한 대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2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하는데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시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된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 경과한 시각)에도 도착하지 않을 시,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관)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 호텔(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숙박객이 다음의 가~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조직,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인 경우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3) 당 호텔이 전항 규정에 의거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숙박객이 전염병인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6) 침실에 누운 채 휴면을 하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을 치거나,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일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항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객실 사용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5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이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에 열거한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1) 오후 14시까지는 1시간 연장마다 1,000엔(세금 포함)

(2) 오후 14시 이후는 1박치 객실요금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구비된 팸플릿, 각종 게시물,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 24시간 영업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